

南阿聯邦共和國 商標制度



金景鎭
〈辨理士〉

1 登錄出願

自己가 현재 使用하거나 장차 使用하려는 商標의 所有者임을 主張하거나 登錄할 것을 希望하는 者는 特許廳登錄官에 대하여 所定의 方式으로 出願할 수가 있으며 이때 所定의 料金도 함께 納入해야 한다.

이와같은 出願에 대해 등록관은 出願을 拒絶 또는 無條件認容하거나 出願의 適當한 變更, 修正, 制限條件을 붙여서 인용하게 되는 것이다.

출원의 거절, 또는 條件付認容이 있을때 이에 대한 出願人의 請求가 있으면 등록관은 自기의 決定理由 및 그 結論에 到達하는데 사용한 資料를 書面으로 明確히 해야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異見이 있으면 法院에 上訴할 수가 있다.

거절등에 대한 出願인의 上訴가 있으면 法院은 필요에 따라 出願인 및 등록관을 審問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出願의 如何한 變更, 修正, 制限條件을 붙여서 인용할 것인지의 與否에 대해 判決하게 된다.

또한 商標登錄出願의 인용이 있게되면 出願인은 遲滯없이 이것을 所定의 方式으로 公告해야하고 公고시에는 인용에서 붙은 制限條件등을 모두 掲載하여야 한다.

한편 商標主가 商標의 어떠한 部分에 대해서 獨立하여 獨占의 使用權利가 있다는 要旨을 主張하려면 商標의 全部 또는 그 部分을 各自 分離商標로서 出願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분리商標는 獨立商標로서의 모든 條件을 갖추게 되며 또한 聯合商標로서의 權利義務를 具備한 것으로 본다.

2 異議申請

누구든지 出願公告한 날로부터 2個月 以內에 商標登錄에 대한 異議를 特許廳에 提出할 수 있다.

이의가 제출되면 그로부터 1개월내에 出願인은 특허청에 대하여 自기의 出願이 當正하다는 이유를 記載한 答辯書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異議人과 出願人(答辯人)은 다같이 所定의 手數料를 내게 되어 있다.

등록관은 雙方當事者의 同意를 얻어 이의 및 答辯을 審査하고 아울러 그 認容處分도 再審査하여 역시 雙方의 同意를 얻어 當事者에게서 다음事項을 審問決定한다.

- ① 그 出願의 거절
- ② 그 商標의 등록
- ③ 自기가 適當하다고 인정하는 變更, 制限, 修正 및 기타의 條件을 붙인 商標의 등록
- ④ 異議申請節次를 實行하도록하는 要旨등이다.

이에따라 正式의 이의절차를 이해하라는 등록관의 命令이 있을때에는 당사자는 所定의 방식에 의해 證據를 제출하여야하고 등록관은 出願審理期日을 정하여 出願인 및 異議者에게 各各 通知하게 된다.

그리고 등록관은 兩側의 證人도 審問하여 出願을 거절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변경이나 其他條件을 붙이거나 조건 없이 이것을 인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이와같은 등록관의 결정에 대해서 不服할때는 法院에 上訴할 수가 있다.

일단 上訴되면 法院은 당사자 및 등록관을 審問하여 등록을 許與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떠한 조건으로 이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판결한다.

3 登錄 및 存續期間

商標登錄出願이 인용되어 所定의 방식에 의해 公고되고 當該出願에 대해 이의제출없이 異議期間이 滿了되었거나 또한 당해出願에 대한 이의에도 不拘하고 出願의 인용이 있게되면 등록관은 當該商標를 登錄簿에 등록한다.

商標가 등록되면 등록관은 商標登錄證明書를 出願인에 交付한다.

등록상표의 存續期間은 10年이며 更新登錄을 할수가 있다.

④ 登錄使用權者

商標名義人 以外的 者로서 商標登錄(防禦商標은 除外)에 關係되는 商品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制限이나 其他條件을 加하거나 加하지 않고서 당해상표의 登錄使用權者로서 등록하는 制度가 있다.

當事者間의 去來上 契約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하여 등록사용권자는 商標權의 侵害行爲를 阻止하기 爲해 訴訟을 提起할 수 있도록 商標名義人에게 要請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표명義인이 그 請求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 청구후 2개월 이내에 이에 應하는 것을 怠慢히 했을때 등록사용권자는 상표명義인과 똑같은 資格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侵害訴訟을 제기할 수가 있다.

한편 등록사용권자로서 등록하려면 소정의 방식에 의해 등록관에게 書面으로 申請하되(소정의 手數料를 添納하여야 함)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표명義인과 상표등록사용권자 사이에서의 許可使用에 대한 統制의 程度, 獨占的 登錄使用權의 限界.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特質, 許可使用의 樣態 또는 場所 및 其他 制限條件

(3) 登錄申請에 關係되는 商品 또는 서비스.

(4) 許可使用의 存續期間 有無 및 그 기간등이다.

⑤ 讓 渡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에 關係되는 商品나 서비스에 관한 當該事業의 權利와 함께 또는 이것을 分離하여 항상 讓渡하거나 移轉할 수가 있다.

商標登錄名義人은 상표등록에 關係되는 商品 또는 서비스에 관한 당해상표를 양도하려 할때는 當該事情을 開示하는 事情說明書를 소정의 방식으로 등록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관은 이 내용을 照會하여 당해상표를 양도하려는 行爲가 無効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明示하는 證明書를 所定手數料의 납입을 기다려 當該登

錄名義人에게 교부한다.

양도 또는 移轉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명義인이된 자는 자기의 權利를 등록할 것을 소정의 방식으로 등록관에게 수수료납입과 함께 申請하되 이를 檢討, 納得되면 양도 또는 이전에 關係되는 商品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명義인으로서 등록되고 아울러 그 細目을 등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⑥ 罰 則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虛僞로 表示하는 行爲로서...

(1) 등록상표가 아닌 標章을 등록상표인 것처럼 사용할 때

(2) 등록상표의 一部를 분리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이것을 등록하려고 할때

(3) 등록상표가 當該商標登錄에 關係되는 商品 또는 서비스이외의 것으로 등록하려할 때

(4) 등록부에 記入된 制限에 비추어 상표사용의 獨占的 權利가 發生할 수 없음에도 이를 權利로서 行使하려 할때에는 犯則者로 인정하여 100란드 이외의 罰金에 處하고 있다.

⑦ 優先權 認定

條約國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자 또는 그 財産管理人 및 讓受人은 他的 출원에 優先하여 당해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이 등록은 契約국에 대한 最先의 出願日과 同日자로 享受하게 된다.

다만 당해출원은 契約국으로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둘 이상의 契約국에 상표출원을 했을 때에는 앞서말한 6개월의 기간은 當該出願中 最先의 출원일로부터 이것을 起算하게 된다.

그리고 둘 이상의 契約국사이에 締約된 條約規定에 의하여 당해 어느 1국에 適法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거나 어느나라의 法律에 의하여 당해 契約국에 적용으로한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이면 當該條約國에 당해출원을 한것으로 보나 출원한 사실은 소정의 방식으로 이것을 證明해야 하는 것이다.

한방울의 기쁨 한등의 전기

節約하는 마음은 본받을 美德